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간자격 유효기간(5년) 및 등록갱신제도 신설〉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00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호 의원 등 2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8.
3. 회부연월일 : 2025. 1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운영,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민간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등록갱신제도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해당 민간자격을 계속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을 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③ (생략) <u><신설></u>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은 이 법의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의3(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등) ① (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생략)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3. (생략) <신설> 2. ~ 5. (생략)	한다.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제17조제2항·제4항에-----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 -----제17조제2항·제4항에-----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민간 자격을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운영한 자 2. ~ 5.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1)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1)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는데, 현행 「자격기본법」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 등 동법 제17조제1항 각 호2)의 어느 분야가 아니고서는 자유롭게 민간자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전체 민간자격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자격은 총 61,574종으로 이 중 97종이 「자격기본법」 제19조3)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하는 공인된 민간자격임. 2025년 11월 기준 작년에만 10,014건의 민간자격을 접수되었고, 이 중 7,011건이 실제 등록되었음

<전체 민간자격 현황>

구분		자격종목 수	관련법	자격명칭(예시)
민 간 자 격	등록민간자격	61,574	자격기본법 제17조 (주무부장관)	진로상담사, 동화구연지도사, 심리상담사, 필라테스지도자 등
	공인민간자격	97종	자격기본법 제19조 (주무부장관)	TEPS, 도로교통감정사, 지능형홈관리사 등
	계	61,574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9,506	8,323	7,647	8,546	8,077	8,457	8,300	8,196	7,534	7,993	8,767	10,906
등록	6,253	6,521	6,153	6,302	5,849	6,869	6,079	6,056	5,572	6,176	6,398	7,369

자료: 교육부

- 2)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현재 없음.
- 3)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그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정등록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별도의 등록갱신 절차 없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간자격으로서 유효하게 됨. 또한, 「자격기본법」 제18조의3제2항은 민간자격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민간자격의 폐지가 가능('24 총 2,132건 폐지)함.

<최근 5년간 등록폐지 민간자격 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등록폐지(건)	2,515	1,987	2,270	2,121	2,132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러한 제도하에서 최근 10년간 민간자격의 등록 건수는 매년 7,000건을 상회하였으나,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신설,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이 낮거나 법률의 개정으로 자격 발급이 금지되는 분야가 되는 경우에도 민간자격관리자가 폐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격이 유지되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4) 「자격기본법」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 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일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공신력에 비하여 과도한 홍보를 하거나, 충분한 검정 절차 없이 금전적 대가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이른바 “자격증 장사” 등 상업적 운영 사례⁵⁾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한 경우 해당 민간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자격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벌칙(안 제39조 제1의2호 및 제1의4호)을 규정하여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이나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에 대해 소관부처의 변경이나 관리운영 상의 제한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었는데, 등록 갱신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등록갱신의 요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는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짐.

5) 이수민, 김송현, 「“3시간만 들으면 합격증 챙겨”... 스펙 뺑튀기 중심엔 우후죽순 민간자격증», 매일경제, 2025.6.8.
김동인, 「돈 주면 따는 자격증 3만4,000개」, 시사IN, 2019.05.23.

- 참고로, 갱신제 도입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자격 취득자의 해당 자격 취득의 유효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등록의 폐지와 동일하게 기존 등록기간 중 발급한 민간자격의 효력은 해당 민간자격 관리자가 정한 자격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민간등록자격은 공인 민간등록자격과 그 외의 등록자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공인 민간자격⁶⁾은 민간자격 등록 이후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⁷⁾에 공인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별 주무부처의 고시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이 도입될 경우, 공인 기간내의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별도의 갱신절차를 요구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공인자격과 민간자격의 주무부처가 같아 충돌 가능성은 적을 것이나, 필요 시 공인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한다는 입장이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하위법령 등에서 이러한 간주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6) 공인 민간자격은 교육부 소관으로 TEPS영어능력검정(공인기간 2년), FLEX(외국어시험)(공인기간 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KBS한국어능력시험(공인기간 3년) 등이 있음.

7)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춘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개정안에 따라서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39조 제1의2호 및 제1의4호)이 부과되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2. 부칙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시행일과 등록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의 시행일은 이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과규정에서 이미 현행 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한다.
1.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3.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4.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5.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12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안 부칙 제2조제1항은 이 개정안 시행 전 등록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각 민간자격의 등록시점에 따라 유효기간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등록된 자격의 갱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시점이 오래된 경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려는 취지임.

<개정안 부칙 경과조치 규정>

부칙 제2조(등록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한다.		
구분	유효기간	건수
201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23,133종
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등록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13,491종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등록	이 법 시행일로부터 <u>3년</u> 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10,935종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등록	이 법 시행일로부터 <u>4년</u> 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8,321종
2025년 1월 1일 ~ 이 법 시행일 전일 등록	이 법 시행일로부터 <u>5년</u> 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4,648종 (’25.12 기준)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제1 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u>유효기간이 끝나기 12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u>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료: 교육부, 재구성

□ 이와 같이 갱신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 등록에 대한 적용 여부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경비업법⁸⁾은 갱신허가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 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⁹⁾은 제조 허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개정안은 그 입법목적이 민간자격에 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등록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교육부는 현행 민간자격은 등록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있어 등록연도별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등록갱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①개정안에서 신규 민간등록자격에 대해 5년

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6467호 부칙 제3조(경비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는 허가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법 시행 당시 허가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경비업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9)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12조(유효기간의 특례 등) ④ 법(법률 제17248호, 2020. 4. 7.)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10월 8일 전에 제조허가·제조인증·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수입신고를 한 의료기기와 법 제8조에 따라 재심사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은 별표와 같다

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이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 ②개정안에 의할 때,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민간자격에 대하여 부여된 유효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 관계 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운영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며, 부칙과 관련하여 과거 연도별 등록자격 수를 고려할 때, 5년 동안 연간 약 1만 종의 등록된 자격에 대한 등록갱신으로 민간자격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3. 민간자격 관리자의 책무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제17조의3은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3(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 안 제17조의3은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를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자격의 자격 운영, 응시, 검정 및 발급 등에 관한 서류를 통하여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자격의 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자격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자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 참고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자격의 발급 현황, 민간자격 등록증, 검정요건 및 취득절차, 관리규정 등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보존기간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며, 관련 입법례로서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학원설립·운영증명서,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직원 명부, 수강생 대장 등을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학원법 시행규칙상 관련 서류 비치·관리 규정 별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 10.>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제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22호의2 서식	준영구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5호서식	3년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9. 삭제 <2019. 1. 10.>		

□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민간자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바, 최근 공공서비스·금융업 등과 같이 전자문서를 통한 안내문 발송 등 서류의 비치·관리 방식을 전자적 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¹⁰⁾등 입법례를 살펴보면, 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 구비 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자문서를 활용한 문서 비치·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다수¹¹⁾ 발의되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193

1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장부 등의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537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533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5375)